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384
----------	-----

발의년월일 : 2008. 11. .

발의 의원 : 김강수 의원外 6인

1. 제안이유

-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함 (안 제4조 1항)
- 나.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 시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함 (안 제4조제2항)
- 다.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토록 함 (안 제5조)
- 라.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마.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토록 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견 : 별 첨

※ 일부내용 자구수정

·안 제6조 : 기존 “장애인보호자의”

⇒ 변경(반영) “장애인보호자 1인에 한하여”

·부 칙 : 기존 “현재 운영중인”

⇒ 변경(반영)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 관련법규 : 별 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내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 1인에 한하여 관람석을 제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발췌

【장애인복지법】 : 제2조, 제4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4조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표 발의 의원: 김 강 수 의원 (인)

김 강 수 의원외 6인

찬성자 서명명단

의 원 명	서 명